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11

발의연월일: 2020. 8. 7.

발 의 자:김남국・오영환・김경만

김민철 • 이은주 • 윤재갑

윤미향 · 김진애 · 이수진

최혜영 · 박성준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더욱 취약해지면서,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처리자의 범위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 대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 임(안 제34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15제1항제5호).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를 "개인정보처리자(제39조의15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외한다)가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3조제2항,제24조제3항,제25조제6항,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로, "확보에 필요한"을 "확보"로 하고, 같은항 제2호 중 "분실"을 "개인정보의 분실"로,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를 "훼손"으로 한다.

제39조의15제1항제5호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 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로, "아니한 경우"를 "아니하여 개인정 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 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 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제39조의15에 따라 과징금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부과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자등은 제외한다)가 제23조제2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에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 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가-----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 <단서 삭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u>2</u>)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하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력 정도 또는 제29조-----확보 2.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 2. 개인정보의 분실--------훼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 3.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 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 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 4. (생략)
 -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 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 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 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하다)
 - 6. 7. (생략)
 - ② ~ ⑧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 1. ~ 4. (현행과 같음)
-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아니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 손된 경우-----
- 6. 7.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